



FAQ

**1.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
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
대상인지?**

⇒ FAQ 6번 (p. 5)

2.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?

⇒ FAQ 142번 (p. 83)

**3.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
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
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
대금에서의 비중인지,
재료비 대금에서의 비중인지?**

⇒ FAQ 87번 (p. 52)

**4. 재료비 항목이
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로
나뉘지는데 어떠한 항목을
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하는지?**

⇒ FAQ 89번 (p. 53)

5.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지?

⇒ FAQ 47번 (p. 33)

6. 원재료 범위에 기성품도 포함되는지?

⇒ FAQ 41번 (p. 28)

7. 하도급법상 “주요원재료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재료 비용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,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?

⇒ FAQ 79번 (p. 49)

**8.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
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
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?**

⇒ FAQ 80번 (p. 49)

9.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?

⇒ FAQ 40번 (p. 28)

10. 원사업자, 1차 협력사,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

원사업자 입장에서는 1차 협력사가
2차 협력사에서 구매해오는 반제품을
주요 원재료로 보고 하도급대금
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?

⇒ FAQ 81번 (p. 50)

**11. 자금자재를 협력사에게
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
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
납품받는 거래도 하도급거래에
해당하는지?**

⇒ FAQ 29번 (p. 22)

**12. 하도급법 제3조 제2항
제3호에 따라 발급하는 연동
약정서의 경우
원·수급사업자간 거래
계약서와 별도로 작성 하여야
하는지?**

⇒ FAQ 58번 (p. 38)

13. 2~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?

⇒ FAQ 60번 (p. 39)

**14.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
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
않기로 합의한 경우는
원사업자의 연동 계약 체결
의무가 면제 되는지?**

⇒ FAQ 164번 (p. 98)

15.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?

⇒ FAQ 8번 (p. 6)

**16. 설비 발주시
원자재 수급시점에
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
후에는
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
가능한가?**

⇒ FAQ 121번 (p. 72)

**17. 제작품을 포함하는 공사
계약시 원자재 물량에 대한
비용을 선지급하여 하도급대금
연동제 미적용이 가능한가?**

⇒ FAQ 122번 (p. 72)

18.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, 실제 제품을 납품 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?

⇒ FAQ 92번 (p. 55)

**19. 설비계약시 완제품을
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
중간부분품이 있는데 그 중
대표성을 띠는 일부부분품을
주요 원재료로 보는 것에 대해
공급사와 합의가 가능한지?**

⇒ FAQ 97번 (p. 58)

**20. 연동 약정서 발급 시
원·수급사업자가 상호
서명날인하여 체결하지 않아도,
협약하여 확정된 내용으로
원사업자가 발급만 하면 되는
것인지?**

⇒ FAQ 64번 (p. 40)

21. 연동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 가능한지?

⇒ FAQ 100번 (p. 61)

**22. 발주자-원사업자,
원사업자-수급사업자간
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
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
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
같아야 하는지?**

⇒ FAQ 103번 (p. 62)

**23.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
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
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
객관적 원재료 가격 기준
지표로 정해도 되는지?**

⇒ FAQ 102번 (p. 62)

**24.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
하도급대금 연동 지표 관련
협약이 길어질 경우 미협약의
내용에 대해서는 추후
협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
수 있는지?**

⇒ FAQ 번 (p. 5)

**25. 공급업체와 하도급대금
연동제를 체결하고 추후에
상호협약의 하에 원재료 가격
기준 지표나 하도급대금 연동
산식의 내용 수정이
가능한가요?**

⇒ FAQ 105번 (p. 63)

**26.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한
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
경우, 각 물품별로 연동 계약을
체결하여야 하는지?**

⇒ FAQ 75번 (p. 47)

**27.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
지정할 수 있는지?**

**조정 주기를 매월, 분기 등과 같이
주기적인 조건이 아닌**

**"납품 1개월 전"과 같이 비주기적으로
지정할 수 있는지?**

⇒ FAQ 118번 (p. 71)

28. 조정요건을 상승 시,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?

⇒ FAQ 112번 (p. 68)

**29.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
분담비율을 0(원사업자) :
100(수급사업자)으로
설정하는 것도 가능한지?**

⇒ FAQ 125번 (p. 74)

30.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?

⇒ FAQ 126번 (p. 74)

**31. 장기계약기간 동안
원자재 변동 예측이 어려워,
계약기간 3년 중 연동제는 1년간만
적용하고 다시 협의하는 형태와 같이
계약기간과 연동제 기간을 다르게
협의하는 것이 가능한지?**

⇒ FAQ 65번 (p. 40)

**32. 다수의 거래에서 원사업자가
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,
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하도급대금의
10%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가 있는지
문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
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?**

⇒ FAQ 90번 (p. 54)

**33.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를
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
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
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?**

⇒ FAQ 68번 (p. 42)

35. 국내협력사를 통한 해외제조사가 제작한 기성 장비 조달, 설치 공사 (예: 전기공사, 고소작업 등이 병행되는 경우, 설치 공사는 별도 계약 체결)의 경우, 하도급거래? 연동제?



⇒ FAQ 21번 (p.14)

**36. 엔진 제조회사가 자체 사용을
위한 건축공사를 중소기업에
위탁하는 경우, 하도급대금 연동제를
적용 해야 되는지?**

⇒ FAQ 23번 (p. 16)

**37. ‘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
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
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
위탁하는 경우 ‘가 수탁·위탁거래에
해당하는지?’**

⇒ FAQ 25번 (p. 18)

**38. 회사 내 부지에 주차장 및 건물의
건설 공사를 위탁 하는 경우,
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
하는지?**

⇒ FAQ 26번 (p. 19)

39.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?

⇒ FAQ 38번 (p. 27)

**40. 판매를 업(業)으로 하는 자가
수급사업자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
위탁할 경우,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
기성품(에어컨, 샷시, 전등)도 ‘하도급법’
상 제2조제16항의 주요 원재료에
해당 될 수 있는지?**

⇒ FAQ 39번 (p. 27)

**41.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
하도급대금의 10%이상을 차지하는
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
대금에서의 비중인지, 자재비 혹은
재료비 대금에 대한 비중 기준인
것인지?**

⇒ FAQ 87번 (p. 52)

**42. 시멘트,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
자동차 부품, 전기·전자 부품, 나사 등
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
산정하는지?**

⇒ FAQ 101번 (p. 61)

**43. 컨소시움 형태(공동수급업체)로
건설위탁이 이루어지고 수탁기업이
대기업, 중소기업이면 연동의무가
있는지, 대기업이 연동계약 체결을
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
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?**

⇒ FAQ 169번 (p. 100)